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7. 2.(금) / 총 6매(본문3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	
	건설안전과		• 과장 한명희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토부,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

해체공사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

-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...위반사항 153건 적발

- 관리자, 해체감리자에 과태료 및 자격정지 조치...

□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(금)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(노형욱 국토부 장관)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-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현장 210개를 선정 (GIS활용)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(6.14~6.30)한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.

< 합동점검 실시 해체공사 현장 점검 개수(지자체별) > (단위 : 개)

전국	서울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
122 (210)*	46(68)	16(40)	5(10)	6(14)	4(5)	2(8)	1(2)	-	32(46)
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	3(5)	-	2(2)	3(5)	-	1(3)	1(2)	-	

* (괄호) : 총 현장 수(210개) = 미착공현장(16개) + 공사중 현장(106개) + 공사완료 현장(88개)

※ 미착공현장(16개)는 해체계획서 검토(모두 부적정)하였고, 해체공사 완료현장(88개)은 해체완료보고서(감리일지 등 포함)를 통한 시공의 적정성 등 확인 예정(7월중)

< 합동점검 개요 >

- (점검대상) 그간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*(GIS) 등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체공사현장 210개
- * 건축물 연면적, 건축물 층수, 인근도로폭,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(20m이내), 교통흐름, 인구밀집지역 등 고려하여 위험수준 구분
- (점검기간) '21.6.14(월)~'21.6.30(수) 간 집중적으로 실시
- (점검항목)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 진행 여부,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, 현장 인접 건축물·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

□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현장(210개) 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,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,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,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< 합동점검 실시 해체공사 적발 현장(지자체별) > (단위 : 개)

전국	서울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
73	16	13	3	6	4	2	1	-	21
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
	2	-	1	2	-	1	1	-	

[해체계획서 부실작성 - 95건]

- 보행자·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미비,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등 해체계획서 작성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 다수 적발

[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- 31건]

- 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 적발

[해체감리자 업무태만 - 27건]

-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·공법 사용, 건물 상층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(잭서포트) 설치상태 불량,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·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발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현장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(38건) 및 해체감리자(39건)에게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,

○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.

※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, 지자체별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

□ 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역내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 전수점검하고 있으며,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 조치 완료이후에 공사 재개조치를 하고,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·통합운영 조치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, 상주감리 도입,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해체공사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*에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* 건축사, 구조기술사, 해체공사 시공업체, 국토안전관리원, 지자체 등

□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“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”을 지시하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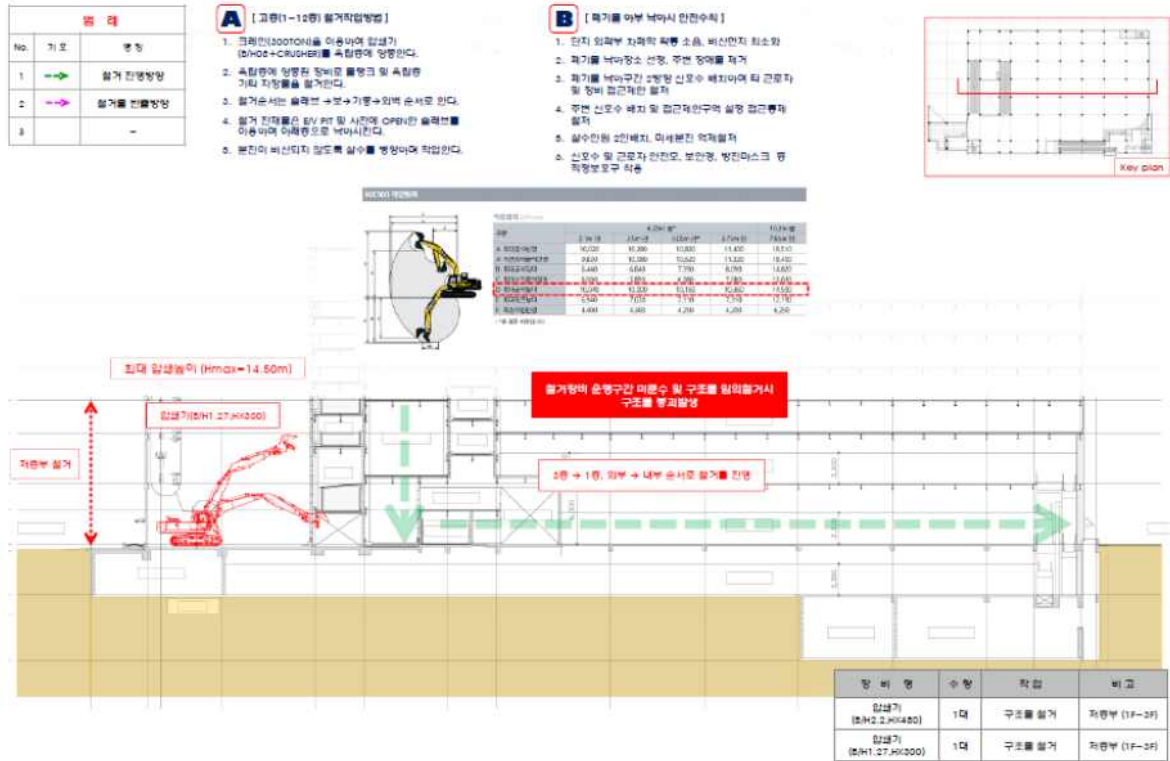
○ “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,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 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 해체계획서 부실작성

< 적정 사례 >



장비 작업반경, 작업 경로, 도면 등 해체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

< 미흡 사례 >

- 철거대상 건물 해체 시 주변 시설의 해당 건축물에 안전조치 후 해체한다.
- 28m 높이까지 해체 할 수 있는 530장비를 투입하여 상층부터 해체한다.
- 당 현장은 28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없으므로 모든 건축물을 동일하게 해체한다.



장비 작업반경, 작업 경로, 도면 등 해체방법에 대해 미작성 및 부실작성

2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

< 미흡 사례 1 >



해체계획서와 달리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공사 실시

< 미흡 사례 2>



해체계획서와 달리 잔재물 과적치

3 해체감리자 업무태만

< 미흡 사례 1 >



해체공사 주변 통행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시행

< 미흡 사례 2>



해체공사 주변 통행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시행(낙하물방지망 미설치)